

심의 번호: 14-127[심의일: 2014.10.24]

『퇴직연금용 정기예금(만기지급형)』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용 정기예금(만기지급형)특약,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퇴직연금용 정기예금(만기지급형)

■ 상품특징: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 계약 내</u>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 등에 따릅니다.

0 - 1 0 9	시는 동상 또는 등시		<u>기 때 </u>						
구 분	내 용								
가입대상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								
계약기간	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								
가입금액	1원이상								
납입방법	일시납								
계좌수	제한없음								
만기 재예치	■ 대상계좌: 만기재예치를 신청한 계좌 ■ 재예치일자: 만기일 ※ 반복처리 ■ 재예치기간: 당초 계약기간 ■ 재예치금액: 불입원금과 이자 ■ 적용이율: 재예치일 현재 고시이율								
예금 일부해지	3회(만기해지 포함)까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별로 횟수 산정 단, 신규당일에는 일부해지 불가								
제한사항	질권설정 및 담보제공(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인 경우 가능), 지급정지								
적용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								
	구분		6개월		1년	2년	3년	5년	
	확정급여형(DB)	연2.20%		연2.38%		연2.51%	연2.66%	연2.85%	
(2014.11.01일 현재)	확정기여형(DC)/IRI	>	연2.20%	연2	2.38%	연2.51%	연2.66%	연2.85%	
중도해지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1개월 미만 경과분	연 0.1%			6개월 이상 경과분		약정이자율 X 40%		
	1개월 이상 경과분	약정이자율 X 209			1년 이상 경과분		약정이자율 X 50%		
	3개월 이상 경과분	약정이자율 X 30%			3년 이상 경과분		신규가입일(최종 재예치일) 당시 3년제 고시이자율		
특별중도해지 이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 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가입일(또는 최종 재예치일)에 고시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합니다 ▶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▶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(무주택인 가입자의주택구입,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 등) ▶ 퇴직연금 전체(또는 일부)를 대구은행내의 다른 퇴직연금계약으로 이전하는 대구은행내 계약이전의 경우 ▶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 								

2 거래 조건(계속)

구 분	내 용						
	▶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						
	▶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						
	▶ 수탁자의 사임						
	▶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						
특별중도해지 이자율 <u>특별중도해지이자율</u>							
이 자율 (단리, 세금납부전)		경과기간	이자율				
		1년 미만 신규가입일(최종 재예치일) 당시 확정기여형/IRP형의 6개월제 고시이자율					
	1년	1년 이상 2년 미만 신규가입일(최종 재예치일) 당시 확정기여형/IRP형의 1년제 고시이자율					
	2년	이상 3년 미만	신규가입일(최종 재예치일) 당시 확정기여형/IRP형의 2년제 고시이자율				
	3년 이상		신규가입일(최종 재예치일) 당시 확정기여형/IRP형의 3년제 고시이자율				
이자지급방식							
세재혜택	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불가						
계약의해지	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						
예금자 보호여부	해당	보험공사가 보 금융상품의 원	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로 가입시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	

3 유의사항

-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- 이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 대상 전용상품입니다.

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감동센터(1566-505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dgb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